

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56호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
일부개정 2013. 12. 26 조례 제 514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4. 10. 31 조례 제 545호
일부개정 2015. 10. 2 조례 제 60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6. 3. 11 조례 제 662호
일부개정 2018. 10. 5 조례 제 821호
일부개정 2025. 3. 7 조례 제120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4. 10. 31, 2016. 3. 11>

제2조(설치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평삼보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25. 3. 7>

② 복지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에 둔다. <신설 2025. 3. 7>

③ 군수는 주민의 접근성, 복지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분관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5. 3. 7>

[제목개정 2025. 3. 7]

제3조(업무)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례 발굴, 사례 개입 등 사례관리 업무
2.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업무
 - 가. 가족관계 증진사업, 가정문제 해결·치료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
 - 나. 급식서비스, 보건·의료서비스,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
 - 다. 아동·청소년 사회교육, 노인여가·문화사업 등 교육문화 서비스
 - 라. 직업기능훈련, 직업능력개발 등 자활지원 서비스
3. 지역사회 연계, 주민복지 증진, 자원봉사자 관리 및 개발 등 지역 조직화 업무
4.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

[전문개정 2025. 3. 7]

제4조(시설의 이용)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를 우선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5조(이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, 2018. 10. 5, 2025. 3. 7>

1. 감염병환자
2.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비용의 수납)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. 다만,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7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11>

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, 재정능력,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8조(위탁기간)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, 2018. 10. 5>

[제9조에서 이동 2016. 3. 11]

제9조(운영비 보조) ① 군수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, 인건비,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4. 10. 31>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[제8조에서 이동 2016. 3. 11]

제10조 삭제 <2014. 10. 31>

제11조 삭제 <2014. 10. 31>

제12조 삭제 <2014. 10. 31>

제13조 삭제 <2016. 3. 11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③(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2. 26 조례 제514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(2014. 10. 31 조례 제54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2 조례 제60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부칙(2016. 3. 11 조례 제66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0. 5 조례 제82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3. 7 조례 제120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삭제 <2025. 3. 7>

